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19호 2012. 11. 5.(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공고 제2012-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공고 제2012-9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6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4조)
- 작은도서관의 설치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근거 (안 제8조)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 민간 후원활동 및 평가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1.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 연 락 처 : 전화 032-749-8275, FAX 032-749-827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요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최소 연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①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 ①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 목적에 맞게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운영 및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는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3. 기타 작은도서관 관련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공고 제2012- 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舊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하고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독서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도서관 자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4조)
- 부칙 (안 제1조 ~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 연 락 처 : 전화 032-749-8275, FAX 032-749-827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이라 함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도서를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실”이라 함은 도서관내의 각종 도서 및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열람·대출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퇴실”이라 함은 도서열람 및 대출과정을 마치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독서회원”이라 함은 도서관의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란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통합도서관회원”(이하 “통합회원”이라 한다)이란 독서회원 중 통합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제4조(독서회원제의 운영) ① 관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독서회원제를 통합도서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통합도서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독서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통합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통합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로 하고 있는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서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독서회원증 또는 통합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⑥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로 사용할 수 없다.

⑦ 회원증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분실(훼손)신고일로 부터 2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독서회원의 자격상실) ① 독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2.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3.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회원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상실의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이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반환) 열람자가 퇴관할 때에는 열람 자료를 제자리에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대출) ①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의 대출은 1인당 5권 이내로 하되 관장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동일인이 반납자료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제9조(대출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의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자료반납)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로 한다.

③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 도서관의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1조(자료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변상) ① 도서관 도서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도서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한 도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관장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위해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 제3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이관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료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이용자의 편의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도서관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③ 조례 제25조 제3항에 다른 자료의 폐기·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자료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5.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어린이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다른 규칙에서의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으로,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연수청학도서관”으로, “어린이도서관장”은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린이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독서회원제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통합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고 통합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통합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그 밖의 종전의 어린이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독서회원제 운영, 독서회원의 자격정지, 도서 대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어린이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